

『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조례에 규정된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,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되었을 때 열람기간을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(안 제10조)
 - 가. 법률에 따라 청구인서명부의 열람기간을 7일로 규정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촉 위원회의 구성 비율 규정을 신설(안 제12조)
 - 가.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 위원 구성
- 공고의 대상이 되는 법조문 추가(안 제16조)
 - 가. 법 제26조(재투표 및 투표연기) 제1항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주민투표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되었을 때 열람기간과 공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추가하고,
- 그 밖의 사항들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개정의 법적근거가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.